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나23041, 2018나2305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치료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영수

변론 종결 2018. 11. 28.

판결 선고 2019. 1. 30.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가단3889, 2017가단 130552(병합)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184㎡ 중 3/8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6. 1. 1.부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지분권 상실일까지 월 363,63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상 토지를 묵시적으로 유증 또는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대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고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경료 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5행의 "협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를 "협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14가합2363호로 망 D의 피고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외에 피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소송으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원,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로 변경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이은혜, 판사 전상범